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249
----------	------

제안연월일 : 2021. 3. 3.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20년 10월 16일 이영실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1월 27일 정지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2월 5일 김재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3.3.)에서 일괄상정하여 심도 깊게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유기·학대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유기동물 등의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길고양이의 안락사 및 중성화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길고양이 및 동물 보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유기동물의 동물보호센터에서의 보호조치 및 소유자 반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호)
- 길고양이 중성화 후 포획장소 외 다른 장소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생활공원 등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할 가능케 하고자 함. (안 제2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등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3개월”을 “2개월”로 하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동물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동물을 보호조치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공고기간 중 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보호조치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입양 또는 기증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중 “포획하는”을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으로, “포획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를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11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의2. (생 략)</p> <p>2. “등록대상동물 “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u>3개월 이상인 개</u>를 말한다.</p> <p>3. ~ 9. (생 략)</p> <p>제7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②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 .</p> <p>1. · 1의2. (현행과 같음)</p> <p>2. ----- ----- ----- ----- <u>2개월</u> ----- - .</p> <p>3. ~ 9. (현행과 같음)</p> <p>제7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u></p>

제7조의2(맹견의 관리) (생략)

<신설>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② (생략)

<신설>

<신설>

다.

제7조의2(맹견의 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동물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동물을 보호조치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공고기간 중 소유자가 반환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보호조치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입양 또는 기증할 수 있다.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생략)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설>

<신설>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11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
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
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